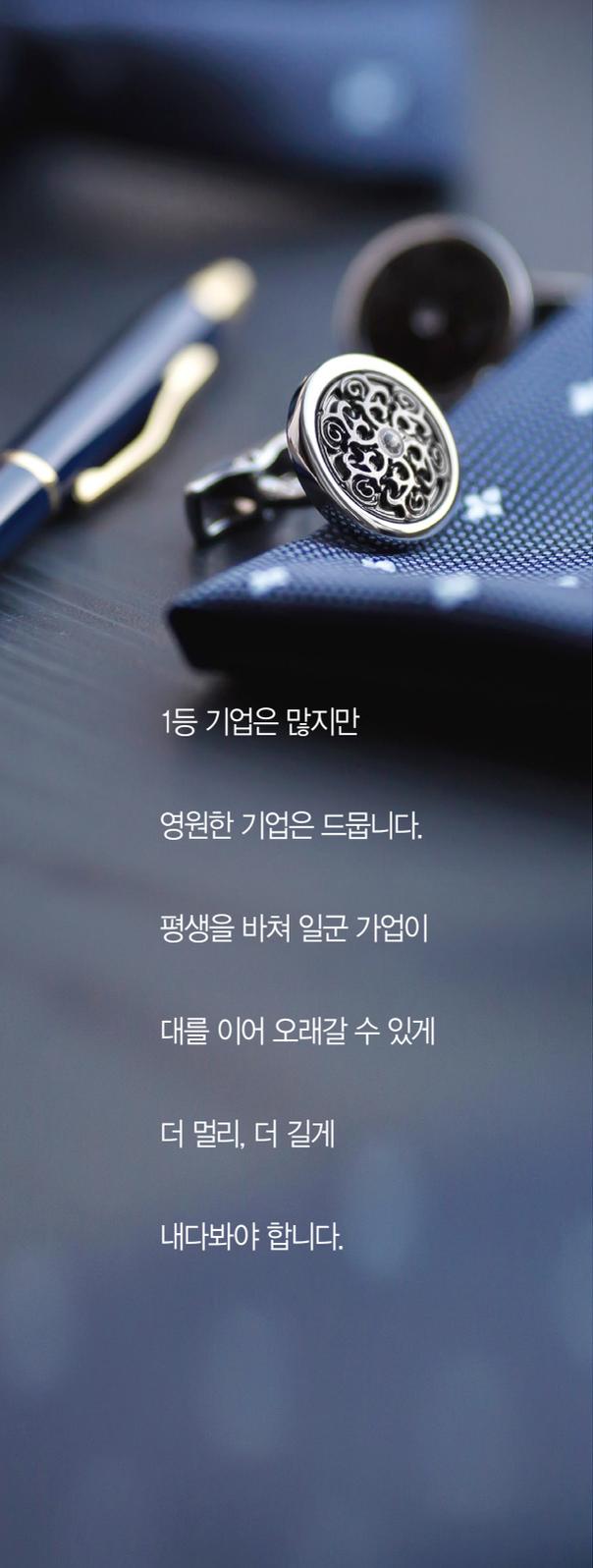




미래를 내다본 안목이
오늘의 당신입니다

삼성

CEO 보장정기보험 (2501)(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 상품제안서



1등 기업은 많지만

영원한 기업은 드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

대를 이어 오래갈 수 있게

더 멀리, 더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C O N T E N T S

I.

법인CEO가 고려해야 하는 RISK

01. 기업 경영 중 법인CEO 유고 RISK	04
02. 상속세 RISK	05

II.

삼성 CEO 보장정기보험 주요 상품내용

01. 상품의 보장 내용	07
02. 보험료 납입면제	08
03. 다양한 제도	
①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09
②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10
③ 플러스연금전환특약	11
04.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	
① 전기납	12
② 20년납	13



I.

법인CEO가 고려해야 하는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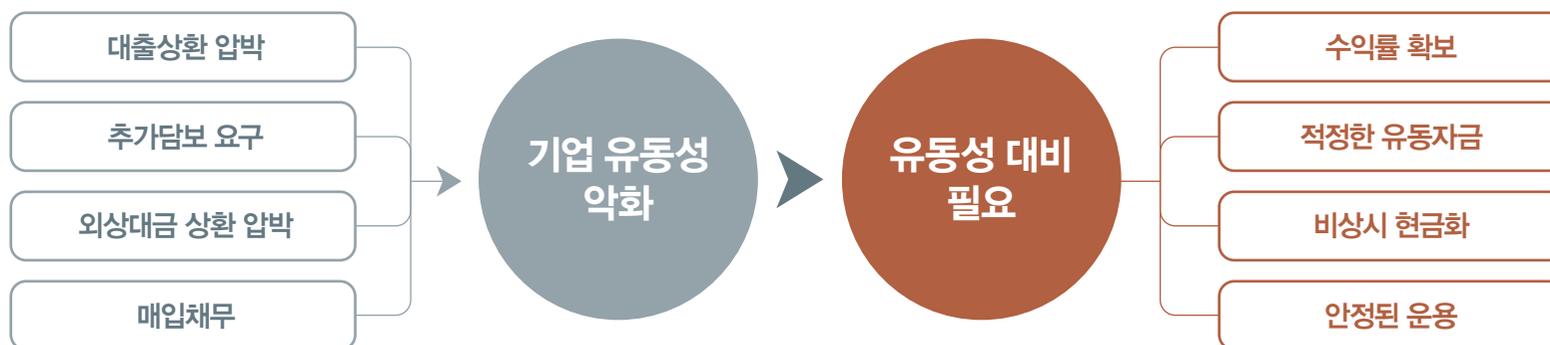
01. 기업 경영 중 법인CEO 유고 RISK
02. 상속세 RISK

기업 경영 중 법인CEO 유고 RISK

Q

만약 법인CEO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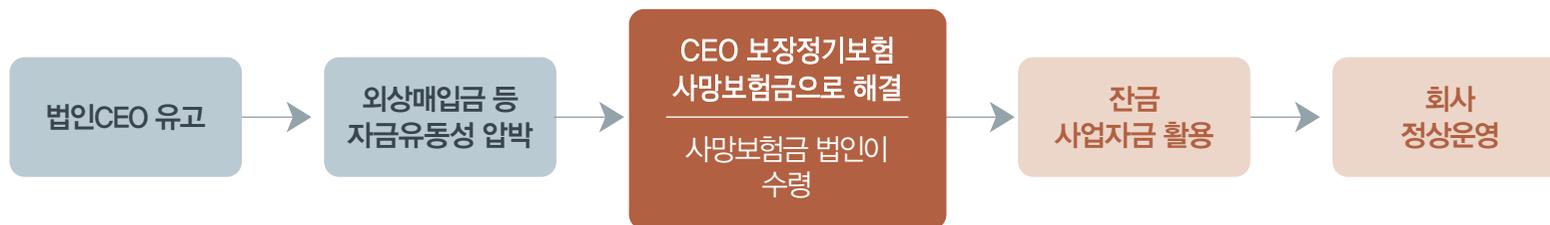
법인의 주주이고 최고 경영자이며 회사 채무의 책임자인 법인CEO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

사망보험금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CEO에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법인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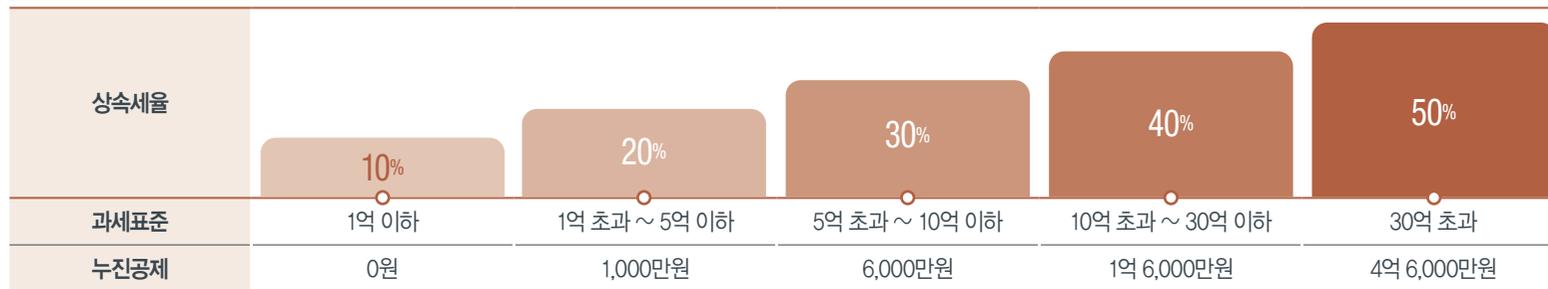
상속세 RISK

Q

만약 법인CEO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중에는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법인CEO 보유지분의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납부 부담이 더욱 늘어나며, 은퇴 이후에도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동성 자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안정적인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부 원칙 납부수단 : 현금(원칙),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 국세청]

A

사망보험금 체증형 구조 활용시, 사망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사시 상속세 부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0년 이후부터 40년까지 매년 가입금액의 10%를 정액체증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망보험금이 커지므로 증가하는 상속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법인계약의 계약자나 수익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동안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사망이 보장되는 종신상품과 비교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 전제가 되는 적용세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인CEO의 자산 및 법인 운영 현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페이지의 상속세율 관련 내용은 2024년 기준 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세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삼성 CEO 보장정기보험 주요 상품 내용

01. 상품의 보장 내용
02. 보험료 납입면제
03. 다양한 제도
 - ①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 ②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 ③ 플러스연금전환특약
04.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
 - ① 전기납
 - ② 20년납

상품의 보장 내용

법인CEO의 RISK 대비에 안정성을 더하고 상속세 증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보험기간 : 90세 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전기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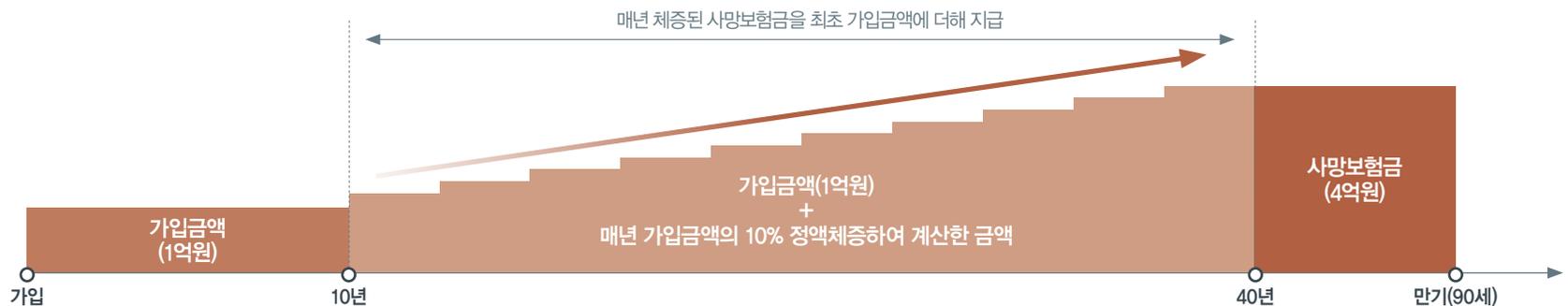
■ 가입나이

- 20년납 : 남자 59세 ~ 69세 / 여자 58세 ~ 69세
- 전기납 : 남자 20세 ~ 75세 / 여자 31세 ~ 75세

■ 보장내용

[주보험 가입금액 1억원 가정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년 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억원
		1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4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억원 + 매년 1천만원을 정액체증한 금액
		40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4억원



※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할인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자 및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보험금은 법인으로 지급되며, 법인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 상속인이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시에는 관련 세법에 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로 어려울 때 든든하게 힘이 되어 드립니다.

주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드립니다.



참고사항 **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시 납입기간 동안 납입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계약은 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는 법인 고객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 및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의 시기와 범위는 각 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자인 법인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손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상품과 관련된 내용 이외 세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계약의 계약자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①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장성계약을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1회 한)

전환 조건(모두 충족시)

- 보장형 계약 가입 후 7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
-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 전환 후 계약의 계약자는 전환전 계약의 계약자와 동일
-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의 전환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자녀(자녀가 복수인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1인에 한)"
-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20세~80세

전환방법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시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함
- 주보험(보장형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전환이 가능하며,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전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함. 또한, 「보장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일부를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적립형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함
- 배우자 또는 자녀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잔여 보장형 계약의 피보험자는 변경없이 계속 유지됨

※ 전환이후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적립형 계약의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전 알릴의무 등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전환된 이후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적립형 계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제도 ②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일정 요건 충족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내용

-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정기보험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하게 하는 종신 가입권한 서비스 운영
(단, 보험료 요율산정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더라이팅 실시 가능)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 전환 전/후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동일

전환방법

- 계약자가 종신보험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전환 전 계약의 전환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전환시점부터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해 계산하며 전환 후 계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상태에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음
- 전환 후 계약의 가입한도는 전환 전 정기보험 주보험의 전환 당시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전환후 계약에 추가되는 선택특약은 보험적격자인지 여부를 심사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종신보험으로 전환 불가
 -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70세를 초과하는 경우
 - 계약의 보험기간 5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 보험기간 만료전 5년 이내,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보험기간 만료 전 7년 이내인 경우

다양한 제도 ③ 플러스연금전환특약

일정 요건 충족 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전환 가능시기

- 보장형계약 가입 후 7년이 지난 경우 (단,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의 경우 10년 이상 경과한 계약)
- 보험료 납입면제건은 전환전계약(보장형계약)의 납입기간이 경과한 계약
- 피보험자 나이기준 : 45 ~ 80세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조건

- 연금전환 후 계약자 : 전환 전 계약자와 동일
- 연금전환 후 피보험자 : 전환 전 피보험자 또는 연금전환 당시 전환전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전환방법

- 주보험 모두 전환 또는 주보험 일부 감액 후 전환 가능
- 전환되는 주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연금지급재원(연금개시시의 전환전 계약의 전환적립액으로 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연금액을 계산)

연금지급방법 (연금전환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종류에 따라 연금을 지급)

-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상속연금형, 체증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등
- ※ 연금지급방법 및 형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세요.

※ 연금으로 전환시 보장형계약의 사망보험금은 감액한 계약자적립금의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 연금전환특약은 향후 실제 연금전환시에는 전환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의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 보증이율 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전환시 기존의 보장형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장형계약 가입금액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의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 ① 전기납

■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남자					여자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전기납	342,900	373,200	399,700	415,800	421,000	222,400	243,200	263,000	275,700	278,700

■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남자 40세,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전기납, 월납, 월보험료 373,200원

경과년수	나이	납입보험료누계(원)	사망보험금(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41세	4,478,400	10,000	0	0.0
3년	43세	13,435,200	10,000	4,396,550	32.7
5년	45세	22,392,000	10,000	17,582,550	78.5
10년	50세	44,784,000	10,000	39,729,950	88.7
20년	60세	89,568,000	20,000	80,633,050	90.0
30년	70세	134,352,000	30,000	118,758,930	88.3
40년	80세	179,136,000	40,000	127,205,850	71.0
50년	90세	223,920,000	40,000	0	0.0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시 ② 20년납

■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60세	65세	69세	60세	65세	69세
20년납	521,100	475,200	452,900	357,800	319,100	293,000

■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남자 60세, 표준체, 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월보험료 521,100원

경과년수	나이	납입보험료누계(원)	사망보험금(만원)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1년	61세	6,253,200	10,000	830,040	13.2
3년	63세	18,759,600	10,000	6,758,470	36.0
5년	65세	31,266,000	10,000	24,387,570	78.0
10년	70세	62,532,000	10,000	52,942,550	84.6
15년	75세	93,798,000	15,000	78,128,090	83.2
20년	80세	125,064,000	20,000	102,799,400	82.1
25년	85세	125,064,000	25,000	78,866,900	63.0
30년	90세	125,064,000	30,000	0	0.0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은 세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합니다.

국내 고객만족 대상의 그랜드슬램 달성



국가고객만족도
생명보험부문 21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2004~2024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생명보험부문 22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선정) 2003~2024



한국산업고객만족도
생명보험부문 20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05~2024

2023년 보험금 지급액

사고보험금 + 연금지급액 + 만기보험금(분할만기 포함)



11조 9,023억

삼성생명 총자산규모

2024년 3분기 경영공시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312조

시장점유율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협회



1위

보험금지급능력

2023년 기준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AAA

가입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 이 상품은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보다 적은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단, 납입완료시점이 가까울수록, 「후후 납입할 보험료 총액」 대비 「납입기간 완료시점 해약환급금 증가액」의 비율이 커지므로, 해지에 따른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 ※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 본 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 삼성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1588-3114), 금융권 두넛콜(www.donotcall.or.kr)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로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은 부여받지 않았으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